

살충제 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명시된 물질의 독성효과

성별	남성	나이	58세	직종	살충제 배합 작업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노동자 ○○○은 2017년 8월 28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 2018년 1월 11일 살충제 배합작업을 하던 도중, 콧구멍이 따갑고 쭈시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로도 증상이 지속되어 로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노동자는 상기증상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노동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5일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 휴식하여 주 평균 40시간정도 근무하였다. 유충구제작업, 포충기 점검 및 작동확인을 하기 위해 방역 약품을 판매한 곳에서 지정한 위치의 정화조에 살충제 약품 넣는 일, 화장실, 건물 야외에 설치된 포충기 설치, 작동 점검 등을 하였다. 또한 공장에서 제작된 방역약품과 방역기계를 구매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살충제 교반 및 충전 보조를 하기 위해 방역용 약품을 농공단지 내 위치한 공장에서 배합하고 충진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노동자 진술 상 방진복의 착용은 없었으며 전면형 마스크와 목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 피부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노동자는 2017.09.11. 작업 후 귀가하여 몸을 씻고 난 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약 4시간가량 안면부가 화끈거리며 자극증상을 보였다. 약 2-3일 간 증상이 지속되다 자연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그 날 이후 아프다기 보다는 ‘햇빛에 노출되면 화끈거리는 느낌’ 같은 것이 하루 2-3회, 30분가량 나타났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대학병원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체증상

장애로 진단 받아 약물 복용하였다. 과거력으로는 2008년 11월 상행결장 악성신생물 발견되어 수술적 절제술을 받은 후 완치판정 받은 바 있다. 2010년 2월 고혈압 진단 하 고혈압약 복용하며 혈압조절 중이다. 2010년 4월 알레르기접촉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치료, 2012년 9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진료 받았음을 건강보험수진 이력 상 확인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알러지성 비염으로 진료 받았으며 기타 과거력 상의 특이소견은 없다. 2018년 1월 안면부, 코의 자극증상 발현한 이후의 기타 질병력으로는 2018년 7월 28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8월 14일 복통, 2018년 8월 18일 당뇨 진단 후 당뇨약 복용 시작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노동자 ○○○은 58세가 되던 2018년 1월 특정 살충제 배합 작업 후 안면부 및 비강의 자극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알러지 진단을 받았다. 2017년 8월 23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3월 31일 퇴사 할 때까지 총 8회 가량 살충제 배합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2회는 램다싸이할로스린의 배합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가 취급한 램다싸이할로스린은 인체에서 피부자극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상은 노출 30분 이내에 시작되어 6시간에서 수일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노동자는 살충제 배합 작업 시 피부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램다싸이할로스린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해당 피부증상은 식품이나 자외선 노출 등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부 질환과 임상 양상이 다르며, 뚜렷한 비직업성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1차적인 노출 이후 피부 자극증상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노출 된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 호소하는 비특이적인 증상은 본인의 진술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램다싸이할로스린 노출로 인해 장기적인 피부증상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호소하고 있는 피부증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끝.